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4 선고 2021가단52773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21.
판 결 선 고 2022. 4. 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7. 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5,547,06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47,0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청구원인변경 포함)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취소 범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7,560만 원이고, 그 중 채무자 C 지분에 상응하는 1/4 가격은 1,890만 원이다. 이는 아래에서 산정하는 C의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4. 가액배상액 산정
 - 판결금액:
 - 변론종결일: 2022. 3. 21.
 - 기간: 2011. 9. 25.부터 2022. 3. 21.까지 10년 178일(위 판결 주문에 의하면 지연이자를 ‘연’ 단위로 계산하도록 명하였으므로, 계산도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산액: 5,547,064원 {= 1,790,800원 + 1,790,800원 × (10년 + 178일/365일) × 0.2, 다만 원 미만은 버린다}

판사 서영호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여, 예금 등 채무를 이행하고, 대출 등 채권을 회수하는 정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업무 및 그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정리금융기관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 피고는 2017. 7. 7.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C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7. 8. 1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입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은 소외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08391호 양수금 청구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갑 제2호증의 1 판결문), 원고는 2011. 8. 26. 소외 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도 계약서에 따라 위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소외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갑 제2호증의 2 송달확정증명원).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체결된 2017. 7. 7.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3.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내용

가.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합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소외 C는 2017. 7. 7. 자신과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추정지분 1/2)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모두를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8. 10. 접수 제1276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책임재산을 처분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법률행위라 하겠습니다.

나. 채무자 C의 무자력

소외 C는 소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으로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필요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겠습니다).

다.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소외 C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욱 심화되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총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악의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와 C가 형제관계라는 점이나 피고가 소외 C와 이 사건 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악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4.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가.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정

위와 같이 C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C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해행위가 있은 후 2017. 9. 11.자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순위번호 5번,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금 58,8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08391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9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판결문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일탈된 책임재산의 가액이 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그 때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일탈된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추정지분) 지분의 시가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또한 가액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피고에게 위 피보전채권액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원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특정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보전채권액을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결 론

것입니다.

준비서면

사 건 2021가단52773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원고'라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석명준비사항 제1. 가. 및 나. 항에 관하여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각 E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E가 사망한 2017. 7. 7. E의 상속인은 자녀인 G, 피고 B, H 및 C 4명이었는 바¹⁾, 채무자 C는 E 소유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권자였습니다(갑제3호증의1 기본증명서, 갑제3호증의2 가족관계증명서, 갑제3호증의3 혼인관계증명서 각 참조).

그런데 채무자 C는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을 포기하고 말았는 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1) E의 배우자인 I은 2010. 5. 8. 사망하였습니다(갑제3호증의3 혼인관계증명서).

따라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위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7.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금 1,79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5.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석명준비사항 제1. 라. 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2022. 3. 8.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체결일 즈음인 2017. 1. 1.부터 2022. 2. 8.까지 피상속인 E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으며, 채무자 C의 적극재산은 전무하였는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은 채무자 C의 유일재산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채무자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을 포기하였는 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집5층아파트

1층 627.48㎡

2층 627.48㎡

3층 627.48㎡

4층 627.48㎡

5층 627.48㎡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59.1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울산광역시 중구 대 2423.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42340분의 4442

- 이 상 -

